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46 | 2026. 8. 24. (2026. 8. 18. ~ 2026. 8. 23.)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구분지급제’의 적용 대상, 임금비용 지급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ILO 플랫폼 노동 협약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 채택의 의미를 확인하고, AI와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고용노동부>는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 사업의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는 리모델링 인허가 동의율을 완화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제고하고,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 기관을 1곳 추가하여 보다 원활하고 면밀한 안전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는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 물류에 기반한 제조·연구 등 고부가가치 활동 촉진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현행 2주인 소집통지 및 공고 기간을 4주로 확대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0인)**」,

검사, 피고인, 변호인 및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공소장, 의견서 등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서류에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검색한 법령 등을 인용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에 인공지능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0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전자주주명부의 작성·비치를 의무화하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가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전자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8인)**」 ,

주권상장법인의 지분을 매수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등에는 기존에 매수한 가격을 고려하여 잔여 주식 등 전부에 대하여 의무공개매수를 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7인)**」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보상 기준을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표시·광고·고지하도록 하고, 계약 체결 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소비자피해보상 처리 사항에 이를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

금융회사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근거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한시적 의무 출연 구조는 유지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

산업통상부장관이 청년 전문인력을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배치하고 산업현장의 숙련인력과 협업하여 해당 기업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현장배치형 산업인공지능 전환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문영의원 등 15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국내에서 설계·제조된 반도체의 우선 구매를 장려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 ,

손해액 추정 규정의 적용 대상을 물건의 양도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제공까지 확대하고, 손해액의 산정대상에 아이디어·데이터·인적 식별표지 등의 무단사용 행위를 포함하도록 하며,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일하여 표현을 정비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4인)**」 ,

현행 2차원 면적 중심의 지적 체계를 3차원 체적 및 수직적 범위를 포함하는 ‘입체지적’ 체계로 재정비하고 ‘입체공간등록부’ 및 ‘입체지적측량’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정동만의원 등 28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안건 심의를 위한 <본회의>가 8.26. 개최될 예정이며, <정무위>, <국방위>, <문체위>, <농해수위>, <기후노동위>, <예결위> 등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및 소관 부처의 업무보고 등이 실시됩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임금구분지급제」 시행기준 마련(고용노동부) 7
- 「ILO 플랫폼 노동 협약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개최(고용노동부)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재정경제부) 9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9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9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후에너지환경부) 10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후에너지환경부) 10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11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1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12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 12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2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해양수산부) 13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해양수산부) 13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14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0인) 15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0인) 15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0인) 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8인) 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7인) 17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17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1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6인) 1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18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19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19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20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문영의원 등 15인)	20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1인)	21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	21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4인)	22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22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23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7인)	23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3인)	24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24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3인)	2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의원 등 10인)	25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정동만의원 등 28인)	25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26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43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중국] 중국 「신형 전력시스템 건설 15·5 계획」 : 6대 전략시장과 한국 기업의 대응방향
- [공정거래] 사업재편을 위한 공정거래법 특례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공정거래]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시행
- [공정거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모빌리티] 국토교통부,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발표 - 중고차매매업자 중심의 하자책임구조 개편 등 중고차매매 생태계에 중대한 변화 예고
- [형사] 형사사법체계 개편 - 수사·기소 분리와 기업 형사사건 전망
- [금융] 저PBR기업 공표제도 세부기준(안) 발표에 대한 상장기업의 대응 전략
- [공정거래]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에 대한 판단기준 및 대응 시사점
- [공정거래] 공정위 2026년 하반기 주요 과제 내용과 시사점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구분지급제」 시행기준 마련 - 내년 1월 1일 시행 앞두고 적용 대상, 판단 기준 및 방법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2026-08-19
-------	---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음.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구분지급제’의 적용 대상, 임금비용 지급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임

임금구분지급제는 도급인이 ①매월 도급 금액 중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②수급인이 이를 노동자의 임금으로 실제 지급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임. 또한, 수급인이 ③지급받은 임금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함

이는 지난 해 9월 2일, 범정부 합동 대책으로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핵심적 과제로서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임금비용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등 체불이 발생하는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것임. 이에 따라, 종전에는 공공분야의 건설공사에서만 적용되었던 임금구분지급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를 「근로기준법」으로 이관하여 적용되는 업종 등을 큰 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음

구체적으로,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 많은 건설·조선업종에서 30일을 초과하는 도급 사업은 공공·민간의 구분 없이 임금구분지급제가 적용됨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추진 중인 ‘발주자직접지급제’*와 적용 범위를 같이 함

* 발주자직접지급제: 발주자는 수급인 등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등에게 공사대금이 분배·지급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할 의무(건설공사 금액 등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될 예정)

조선업은 선박 건조 또는 수리 목적의 도급 사업에 적용하며, 선박 1척을 기준으로 최초 발주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사업에 시행함. 다만, 임금구분지급제가 조선업종에 최초로 시행되며 공공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의 민간 개방 등의 일정을 감안하여, 최초 500억원 이상의 사업부터 시작하고 240억원, 120억원으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함

그밖에 도급인이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금명세서,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 자체적으로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 등을 통해 임금을 지급한 경우도 임금구분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함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8.20. ~ 9.29., 40일) 동안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조선업종 등 관련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사항에도 임금구분지급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는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임금체불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안착시켜 나갈 계획임. 또한, 시행 이후에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용 확대가 필요한 다단계 도급 업종과 사업 유형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힘

고용노동부

「ILO 플랫폼 노동 협약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개최
- 인공지능(AI)·플랫폼 시대,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할 현실적
해법 강구

2026-08-18

고용노동부는 'ILO 플랫폼 노동 협약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음. 이번 토론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 채택의 의미를 확인하고, AI와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고 밝힘

이날 토론회는 ILO 플랫폼 협약의 주요 내용과 의의(노동연구원 남궁준 박사)와 ILO 플랫폼 협약 관련 개선 과제 검토(이화여대 박귀천 교수)에 대한 발제로 시작되었음

먼저 발제를 맡은 남궁준 박사(노동연구원)는 ILO 플랫폼 협약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이번 협약이 플랫폼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 국제노동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음. 또한, 협약이 각국의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유연성을 둔 만큼, 향후 국내 실정에 맞는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귀천 교수(이화여대)는 "ILO 플랫폼 협약이 제시한 플랫폼 노동 보호의 원칙을 국내 현실에 맞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라며, "다양하고 새로운 노동형태를 기존 법령만으로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통해 권익 보호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 협약의 각 조항에 맞게 개별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음

이어 정흥준 교수(서울과기대)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종사자의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며, 플랫폼 노동 보호라는 협약의 취지를 국내 여건 속에서 가장 실효성 있게 구현할 법·제도적 정비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음

고용노동부는 노동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권리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힘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재정경제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8-20 시행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는 등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철회된 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유재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철회된 자에 대한 사용허가 제한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사용허가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를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이 C등급 이하로서 그 안전관리를 위해 보수가 필요하거나 재해 등으로 파손된 행정재산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로 정하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이 일시 중단된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을 손실보상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9-18 시행 예정
-------	-----------------	------------------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변경하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를 급여 지원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473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등의 변경 사항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신청기간 연장 사유 및 상·하한액 등 관련 규정에 반영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9-18 시행 예정
-------	-------------------------------------	------------------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변경하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를 신설하며, 근로자가 자녀의 방학·질병 등의 사유로 1주 또는 2주 기간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73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 법률 제21476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고지 방법 및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새로 도입된 단기 육아휴직 제도 및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관련 변경 사항을 육아휴직의 신청, 신청 철회 및 종료 등 관련 규정에 반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9-18 시행 예정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9-18 시행 예정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면서, 법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462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08-21 시행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한우농가에 지원하는 도축·출하 장려금 및 경영개선자금의 근거를 마련하며, 기업의 한우 생산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한우 및 한우산업의 범위,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기 및 절차, 도축·출하 장려금의 지급 요건 및 절차,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요건 및 절차, 한우 생산업 참여 제한 기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일부개정령

2026-08-20 시행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요건에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58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 대주주의 범위 및 신고사항을 구체화하고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에 관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전에 관한 거래를 할 때 해야 하는 조치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8.20. ~2026.09.29.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도급인이 일정한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의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하고, 노동감독관의 직무·권한, 업무 절차를 규정하는 등 노동 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21533호, 2026. 4. 7. 공포, 2027. 1. 1. 등 시행)됨에 따라,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 사업의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을 정하고, 제정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조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전화: 044-202-7529, 팩스: 0503-8803-0062\)](tel:044-202-7529)

보건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8.19. ~2026.09.28.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바닥면적 합계 기준을 현행 5천제곱미터에서 1만 5천제곱미터로 확대하여 투자 수요에 대응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생산 기능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첨단의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전화: 044-202-2911, 팩스: 044-202-3942\)](tel:044-202-2911)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8.18. ~2026.09.28.
-------	-----------------------	-----------------------------

리모델링 인허가 동의율을 완화(75% → 70%)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제고하고, 수직종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 기관을 1곳 추가하여 보다 원활하고 면밀한 안전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전화: 044-201-3386, 팩스: 044-201-5532\)](tel:044-201-3386)

해양수산부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령안2026.08.19.
~2026.09.29.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 물류에 기반한 제조·연구 등 고부가가치 활동 촉진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민홍철 의원)이 제정됨(2026.4.7.)에 따라, 제정 법률의 시행시기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① 기본계획 (안 제2조)

-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 변경 시 의견청취·관보고시 등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으로 단순오기 등 명백한 오류·법령제정 등에 따른 내용변경·기본계획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규정함

②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등 (안 제3조~제12조)

- 지역지정·변경·지정해제의 절차·제출서류 및 변경지정의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요건을 규정함. 또한,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변경 시 ‘경미한 사항’을 규정함

③ 기업지원 (안 제13조)

- 국가·지자체가 우선 지원하는 기반시설의 범위·지원 내용을 구체화함

④ 규제특례 (안 제14조~제25조)

- 규제의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의 신청·변경 등 절차를 규정하고 규제특례의 대상인 물류관련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함. 또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⑤ 정보플랫폼 (안 제26조 및 제27조)

- 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기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mailto:해양수산부_항만물류기획과) (전화: 051-773-5755, 팩스: 051-773-5755)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9.
~2026.09.28.

기후변화 대응과 2035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해양 탄소흡수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해양 탄소흡수원 기능의 유지·증진을 위해 국가의 책무와 공공기관, 민간 등의 활동 및 연구·개발 등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함

① 해양탄소흡수원의 개념 도입 (안 제2조)

- 현 법률에는 해양 탄소흡수원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여 해양 탄소흡수원 정의 조항을 신설함

② 해양탄소흡수원에 대한 기본원칙과 국가 등의 책무 규정 (안 제4조)

- 해양 탄소흡수원의 유지·증진을 위해 국가 등의 책무 조항을 신설함

③ 해양탄소흡수원의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국가 등의 각종 활동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 (안 제49조)

-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해양 탄소흡수원 유지·증진을 위한 활동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해양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전화: 051-773-5311\)](tel:051-773-5311)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08.20.
~2026.09.29.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등’을 추가하고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업무 범위에 인체세포등의 ‘수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98호, 2026. 5. 26. 공포)됨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를 정하고, 원활한 민원업무의 운영을 위한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및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등의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일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안 제5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안 별표 2, 별표 3)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전화: 043-719-3304, 팩스: 043-719-3300\)](tel:043-719-3304)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0인)

2026-08-18 발의

현행법은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장회사가 일정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공고로 갈음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소집기간은 기관투자자와 일반주주가 주주총회 안건과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기에는 다소 짧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규모가 큰 상장회사는 주주의 수가 많고 주주총회 안건이 기업가치와 주주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주주에게 충분한 안건 검토 및 의사결정 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현행 2주인 소집통지 및 공고 기간을 4주로 확대함**으로써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기업과 주주 간 건전한 소통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542조의4제4항 신설)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0인)

2026-08-18 발의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소송 관계인들이 공소장, 의견서를 비롯한 소송서류의 작성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이른바 ‘할루시네이션 현상’에 따라 실제와 다르거나 존재하지 않는 판례 등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거짓 정보를 그대로 믿을 수 있어 활용 범위나 윤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허위 법령이나 판례가 소송서류에 제출되면 상대방은 그 진위를 일일이 확인하고 반박하여야 하고, 재판부 역시 해당 자료의 존재 여부와 인용 내용의 정확성을 별도로 검증하여야 함. 이로 인해 불필요한 심리가 늘어나 재판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법률정보에 대한 접근과 대응 능력이 부족한 당사자의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나아가 허위 정보가 재판 초기부터 핵심 쟁점을 흐릴 경우 한정된 사법자원이 낭비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과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음

이에 **피고인, 변호인 및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법령, 판례 또는 유권해석 등의 주요내용을 허위로 인용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령 등을 인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피고인, 변호인 및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공소장, 의견서 등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서류에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검색한 법령 등을 인용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에 인공지능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며, 서면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령이 인용되었거나 허위로 인용된 경우, 인공지능 활용 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재판장이 그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진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99조의2 신설 등)

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0인)

2026-08-18 발의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소송 당사자들이 소장, 준비서면 등 소송 서류의 작성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이른바 ‘할루시네이션 현상’에 따라 실제와 다르거나 존재하지 않는 판례 등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거짓 정보를 그대로 믿을 수 있어 활용 범위나 윤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허위 법령이나 판례가 소송서류에 제출되면 상대방은 그 진위를 일일이 확인하고 반박하여야 하고, 재판부 역시 해당 자료의 존재 여부와 인용 내용의 정확성을 별도로 검증하여야 함. 이로 인해 불필요한 심리가 늘어나 재판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법률정보에 대한 접근과 대응 능력이 부족한 당사자의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나아가 허위 정보가 재판 초기부터 핵심 쟁점을 흐릴 경우 한정된 사법자원이 낭비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과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음

이에 법령, 판례 또는 유권해석 등의 주요 내용을 허위로 인용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령 등을 인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소장, 준비서면 등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서류에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검색한 법령 등을 인용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에 인공지능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며, 서면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령이 인용되었거나 허위로 인용된 경우, 인공지능 활용 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재판장이 그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진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9조의2 및 제272조의2부터 제272조의4까지 신설)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8인)

2026-08-18 발의

최근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주권 행사 기반을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업과 투자자 간 건전한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운영과 의결권 행사 절차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주권상장법인의 전자주주명부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주주와의 전자적 소통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가 주주와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한 전자우편주소를 제공받기 어려워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전자주주명부의 작성·비치를 의무화하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가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전자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 편의를 제고하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52조의2 등)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7인)

2026-08-19 발의

현행 「상법」은 합병, 영업의 전부양도 등 회사의 조직이나 사업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 결의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을 통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상장회사의 인수·합병은 주로 기존 최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러한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최대주주만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고 일반주주는 보유주식을 공정한 조건으로 매각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반면 영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일본 등 다수의 주요 국가에서는 인수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여 지배권을 확보하는 경우 잔여 주주에게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공개매수를 제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운영하여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의 지분을 매수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등에는 기존에 매수한 가격을 고려하여 잔여 주식 등 전부에 대하여 의무공개매수를 하도록 함으로써 지배권 변동 과정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인수·합병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2026-08-20 발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온라인 쇼핑몰의 대다수 사업자들이 이용약관이나 거래조건에 소비자 귀책에 따른 환불 및 위약금 규정은 매우 상세히 적시하고 있는 반면, 배송 지연 등 사업자 귀책에 따른 보상 규정은 누락하거나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보상 기준을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표시·광고·고지하도록 하고, 계약 체결 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소비자피해보상 처리 사항에 이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제2항제8호)

정무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1인)

2026-08-20 발의

현행법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신용보증부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는 신용보증금액의 일정 비율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출연금은 서민금융보완계정의 핵심 재원으로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뒷받침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회사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의무 출연 근거는 법률 개정 당시의 부칙에 따라 2026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한 상황으로,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자원 조달 여력이 축소되어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보증 및 정책서민금융 공급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근거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한시적 의무 출연 구조는 유지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출연 의무를 추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6인)

2026-08-21 발의

최근 미국, 영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자본시장에서는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관련된 공시 기준을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음. 이러한 ESG 공시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투자자들이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와 위험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환경적 요인이나 사회적 책임, 기업지배구조 문제는 기업의 재무 성과뿐만 아니라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ESG 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ESG)와 관련된 공시 항목을 신설하고, 그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기업의 ESG 성과와 위험 요소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여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국제적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들이 ESG 요소를 고려한 합리적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59조제2항제5호 신설 등)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2026-08-18 발의

현행법상 내국법인이 자사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에게 식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이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지출액이 손금에 산입되고 있음. 그러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도급·용역·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는 업무추진비 등으로 분류되어 손금 산입 한도의 제한을 받고 있어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내국법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도급·용역·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복리후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04조의37 신설 등)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2026-08-19 발의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함. 또한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최근에 화재가 발생한 물류창고는 그 준공 후에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였음. 대형 물류창고는 그 화재의 피해가 크고 진화가 어렵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물류터미널에도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안 제13조제1항제2호마목 신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2026-08-18 발의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 국내외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하기 위한 정부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 대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뉴미디어가 증가하는 등 다매체 환경 속에서 광고 기획·전략·제작·매체집행 등에 있어서 매체별 특성에 맞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나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광고전문성 부족, 매체집행 및 수수료 활용의 편향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방송발전기금이 방송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약 2% 남짓으로, 각 방송사당 연간 1억원 내외에서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해 지급되는 등 지역방송발전의 필요한 기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시 공공성과 홍보매체의 지역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를 방송통신매체의 광고전문기관으로 설립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하도록 하며,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 또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덧붙여 수탁기관의 수수료 집행 결과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은 전년도 수수료 지원의 집행 결과 및 활용 현황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광고 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방송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6조 및 제10조)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2026-08-18 발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산업의 기반 조성, 관광사업체 지원 및 국내관광 활성화 등 관광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며, 출국납부금은 관광기금 수익의 약 30%를 차지함

그러나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의 후속조치로 2024년 6월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공항 출국납부금이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되면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수입 감소가 초래됨.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공항 출국납부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수지 적자는 2026년 663억원에서 2030년 1조 1,396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출국납부금의 상한을 1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도가 도입된 1997년부터 유지된 금액으로 물가상승과 관광정책 수요 확대 등 변화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출국납부금의 구체적인 부과 수준을 국민 부담, 국제적 형평성, 해외 사례, 물가상승률 및 기금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제기됨

이에 법률상 출국납부금의 상한을 상향하여 변화된 여건에 맞게 부과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3항)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문영의원 등 15인)

2026-08-18 발의

현행법은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산업현장에서는 숙련인력이 축적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암묵지)가 있으나 이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할 역량이 부재한 반면, 디지털·인공지능 역량을 지닌 청년 전문인력은 제조업의 디지털·인공지능 전환에 관여할 기회를 가지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장년층 숙련인력과 청년 전문인력의 협업형 현장배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청년 전문인력을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배치하고 산업현장의 숙련인력과 협업하여 해당 기업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현장배치형 산업인공지능 전환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1인)

2026-08-20 발의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구역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이 제한될 수 있음

그러나 철도·하천 등으로 생활권이 실질적으로 단절된 경우까지 단순 직선거리 기준만으로 동일 생활권으로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대규모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지구 권역 밖에 위치한 기존 전통시장과 소비자 이동 경로, 상권 구조가 명확히 구분됨에도 대형 유통시설 입지가 제한되면 전통 시장 보호라는 목적과 신도시 생활인프라 확충이라는 공익을 조화롭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시 생활권 단절 요소와 실제 접근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전통시장의 실질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유지하되, 실질적인 생활권 구분이 필요한 지역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불합리는 개선하고자 함 (안 제13조의3제1항)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

2026-08-20 발의

현행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전력망, 정보통신망, 데이터센터 등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인프라인데, 핵심 인프라에 필요한 반도체를 해외 수입으로 조달할 경우 국제 위기 시 공급 중단, 정보 탈취 등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국내에서 설계·제조된 반도체의 우선 구매를 장려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 안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30조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4인)

2026-08-21 발의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등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물건의 양도를 전제로 한 손해액 추정 및 사용대가 상당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서비스 제공 등 새로운 형태의 거래가 확대되고 아이디어·데이터·인적 식별표지 등 보호대상이 다양화됨에 따라 현행 규정만으로는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사용대가 상당액의 산정기준이 다른 손해액 산정기준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법률의 정합성 저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손해액 추정 규정의 적용 대상을 물건의 양도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제공까지 확대하고, 손해액의 산정대상에 아이디어·데이터·인적 식별표지 등의 무단사용 행위를 포함하도록 하며,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일하여 표현을 정비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 등의 침해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합리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법률의 체계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의2 등)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의원 등 10인)

2026-08-19 발의

현행법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27년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정부지원 체계가 시행된 2007년부터 2025년까지 보험료 수입 대비 실제 기금지원율은 매년 6%에 미달했으며, 2025년에는 2.1%에 그쳤음

한편, 최근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이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29년부터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현재와 같이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지원기한 또한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본문)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2026-08-19 발의

현행법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27년까지 국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의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정부지원 체계가 시행된 2007년부터 2025년까지 보험료 수입 대비 실제 기금지원율은 한 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14%에 미달했으며, 2025년에는 12.2%에 그쳤음

한편, 최근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이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29년부터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현재와 같이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지원기한 또한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고지원금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100분의 14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상한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고에서 그 부족분만큼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108조의2제1항 등)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7인)

2026-08-20 발의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써 제도 운영과 기금운용의 공공성, 독립성 및 대표성이 균형 있게 확보될 필요가 있고,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규모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기금 운용에 필요한 전문성이 함께 요구됨

그런데 2024년 말 기준 가입자 구성은 사업장가입자가 약 76.2%, 지역가입자가 약 19.4%임에도 현행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의 위원 추천체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추천단체의 전국적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갖춘 단체가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3인)

2026-08-18 발의

기후위기의 심화로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고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에너지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에너지빈곤 및 에너지복지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고, 에너지복지 사업이 임의 조항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고시원·쫄방 등 준주택 또는 비주택 거주자와 같은 구조적 사각지대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에너지빈곤 및 에너지복지의 법적 정의를 명시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준의 에너지서비스 보장을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며, 준주택·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2026-08-21 발의

최근 택배·생활물류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심야·새벽배송 등 야간노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간 반복되는 야간노동은 생체리듬 교란, 수면장애, 심뇌혈관질환 등 근로자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축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야간작업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노동 자체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대상으로 명시하거나 야간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보건체계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은 야간근로를 근로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의 문제로 접근하여 건강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에 사업주의 보건조치 대상에 야간근로로 인한 건강장해를 추가하고, 야간근로시간 및 연속 야간근로 제한, 연속휴식 보장, 건강진단 및 건강상 사유에 따른 주간근무 전환 등 야간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39조제1항제8호 및 제39조의2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3인)

2026-08-18 발의

현행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정 기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경우 ‘만 61세 이상 등’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사업을 양도할 수 있음

그런데 건강상의 문제, 장거리 이사, 적성 등의 사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사업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행률과 청장년층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지난 2024년 1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 제한 규정이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불편 개선방안」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양도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청장년층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진입을 원활히 함으로써 개인택시 운행률 제고와 운송서비스 개선을 통한 이용시민의 승차 편익을 증대하는 동시에, **양도·양수를 통한 단기 차익 거래 방지를 위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할 경우 일정 기간 재양수를 제한**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의2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의원 등 10인)

2026-08-19 발의

현행법은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면서도,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아울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유수시설을 복개하여 해당 유수시설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청사,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심지역의 가용부지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수시설을 복개하여 학교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예외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 그 예외 대상 시설에 **학교를 포함**하여 도심 내 유휴 기반시설을 활용한 교육시설 확충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안 제43조제1항)

국토교통위원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정동만의원 등 28인)

2026-08-20 발의

도시의 밀집화와 공간을 활용하는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지하철, 지하상가, 고가도로 및 송전선로 등 토지의 지상 및 지하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최근 이러한 입체적 토지 이·활용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고가도로 등 토지 일부 공간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구분지상권 설정을 의무화 하는 등 제도적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있음.(국토계획법 개정안, ‘26.5.7. 국회 본회의 통과)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지적제도는 토지의 수평적 위치와 면적만을 등록하고 있어, 지상 및 지하 공간에 설정된 구분지상권 등 입체적 권리관계와 시설물의 점유 현황을 정확하게 공시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로 따라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현행 2차원 면적 중심의 지적 체계를 3차원 체적 및 수직적 범위를 포함하는 ‘입체지적’ 체계로 재정비하고 ‘입체공간등록부’ 및 ‘입체지적측량’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상·지하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공시하여 국가 공적 장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빈틈없이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조 등)

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3인)

2026-08-21 발의

현행법은 정비사업 시행 시 용적률·건폐율 등 혜택의 반대급부로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일부에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부채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업지역 등에서 시행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의 경우 1970년대 최초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 각 지구 별로 분할된 정비지구에서 개별적으로 정비사업이 시행되어 왔으며, 현재까지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미시행지구로 인하여 해당 정비계획의 수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이 경우 정비계획 수립 초기 정비사업이 시행된 정비지구는 건축물 노후년도 경과로 인해 재(再)재개발 시기가 도래하여 사업을 다시 추진 중에 있으나, 동 정비구역 내 확보가능한 기반시설이 부재하여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통한 충분한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정비구역으로 한정되고, 현금납부로 기부채납을 갈음할 수 있는 비율 또한 제한되어 있어 정비구역에는 불필요한 기반시설이 과잉 공급되는 반면,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은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지역 간 인프라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정비구역이 위치한 행정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허용하고, 기부채납을 현금납부로 대신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도심 내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 및 도시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7조제5항 및 제96조제1항 단서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3인)

2026-08-21 발의

택배서비스산업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산업으로 자리 잡았으나, 최근 심야배송 확대에 따라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장시간 야간작업이 일상화되면서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과로사 등 심각한 건강상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야간노동은 국제적으로도 발암가능요인으로 분류되는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야간작업시간, 연속근무, 휴식시간, 건강관리 등에 관한 별도의 보호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집화·배송 외의 하역·분류 등의 업무까지 수행하면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건강상 이유로 야간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도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에 대하여 야간작업 시간과 연속근무를 제한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건강진단 실시, 야간작업 부적합자의 보호, 야간작업에 대한 할증보수 지급, 집화·배송 외 업무의 제한 및 추가 업무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본회의	8/26(수) 14:00	- 안건 심의

2.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정무위	전체회의	8/24(월) 14:00	- 2025회계연도 결산 등
문체위	전체회의	8/26(수) 10:00	- 소위원회 구성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 등
농해수위	전체회의	8/26(수) 10:00	- 2025회계연도 결산, 업무보고 등
기후노동위	예산결산소위	8/25(화) 10:00	-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예결위	전체회의	8/24(월) 10:00	- 2025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
		8/25(화) 10:00	- 2025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
		8/26(수) 10:00	- 2025회계연도 결산 부별심사(경제부처)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8/24(월) 14:00	가업승계법제의 쟁점과 과제	곽규택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8/24(월) 15:00	임직원 기업인수 촉진을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	전은수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8/25(화) 10:00	대한민국 내향해운 미래발전전략 정책 토론회	윤준병·조승환 의 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8/25(화) 10:00	"미국의 대전략과 한국의 선택": 「제10차 대한민국 미래 혁신포럼 세미나」	김기현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8/25(화) 14:00	입원환자 다학제팀의료, 필수요료를 지키는 협력의 힘! : 2026 한국병원약사회·대한병원의학회 국회 정책토론회	김윤·남인순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8/25(화) 14:00	(이재명정부 1년)기후·에너지·환경 정책성과와 향후과제	서왕진·안호영 의 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8/26(수) 14:00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보전·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5회 연속 토론: 농지관리전담기구 신설 및 농지종합 DB구축	문금주·서삼석 의원실 등	의원회관 10간담회의실
	8/26(수) 14:00	국가 기간산업 에너지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김위상 의원실	의원회관 6간담회의실
	8/26(수) 15:00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한 ESS 등 유연성 자원 확대 방안	한정애·정희용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8/27(목) 14:00	AI 시대, 미래 소방안전 구급체계 대전환 토론회	민병덕·김영호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소강당
	8/28(금) 14:00	바이오데이터 활용 중개플랫폼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최수진·김건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자료집 등	8/26(수)	「Data&Law」 제2026-10호(통권 제48호)	국회도서관	
	8/26(수)	「금주의 서평」 제2026-33호(통권 제792호)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45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8/19(수)	「Data&Law」 제2026-9호(통권 제47호)	국회도서관	
	8/19(수)	「금주의 서평」 제2026-32호(통권 제791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8/18(화)	중국	중국 「신형 전력시스템 건설 15·5 계획」 : 6대 전략시장과 한국 기업의 대응방향
8/18(화)	공정거래	사업재편을 위한 공정거래법 특례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8/19(수)	공정거래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시행
8/19(수)	공정거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8/20(목)	모빌리티	국토교통부,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발표 - 중고차매매업자 중심의 하자책임구조 개편 등 중고차매매 생태계에 중대한 변화 예고
8/20(목)	형사	형사사법체계 개편 - 수사·기소 분리와 기업 형사사건 전망
8/20(목)	금융	저PBR기업 공표제도 세부기준(안) 발표에 대한 상장기업의 대응 전략
8/20(목)	공정거래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에 대한 판단기준 및 대응 시사점
8/21(금)	공정거래	공정위 2026년 하반기 주요 과제 내용과 시사점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남형기 | 고문

프로필보기



윤형중 | 고문

프로필보기



김건훈 | 수석전문위원

프로필보기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이승상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